

2018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민주적인 법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20일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모집기간 : 2018. 6. 21(목) ~ 6. 29(금)

2. 모집인원 : 분야별 약간명

분야별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 복지	보건복지
관련 내용	사회복지일반	노인교육, 노인요양, 노인건강 관련	지적 및 지체 장애 외 기타 장애 관련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가족폭력 관련	보건의료, 건강증진 관련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 대상

-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신청서류

- 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1)
- 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서 1부 (서식2)

6. 접수처 및 방법

- 가. 접 수 처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천군청 주민복지과 내)
- 나. 접수방법 : E-mail(hjh0022@hanmail.net) 접수
- ※ E-mail 발송시 제목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성명)
예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홍길동)

7. 선정방법 :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선정

- 가. 1차 심사(서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제외 대상이 아닌 자
- 나. 2차 심사(심의) :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고려 선정

8.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9.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신청서류(파일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선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에 따라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되며, 해당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 (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이사의 직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민법」 제61조, 제 65조)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 이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함(「민법」 제 58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의사에 대 리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054-650-6964)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